

②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, 12월말 기준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등을 금융위에 보고한다.

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(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) ① 영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영 제11조2의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또는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

2. 그 밖에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지주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

②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,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50조(보고) ①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	<신	제49조(조건부자본증권의	예	정사
설>		유 등) ① 영 제11조의2제4항제		
		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		
		고시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		
	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
		를 말한다.		
		1.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영 제11		
		조2의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		
		본증권의 채무재조정 또는 전		
		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		
		고 판단되어 「금융산업의 구		
		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		
		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		
		으로 지정된 경우		
		2. 그 밖에 발행은행지주회사가		
		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		
		시 발행은행지주회사의 경영		
		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		
		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		
		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		
		②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		
		예정사유, 발행조건 및 발행방		
		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		
		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		

<신 설>

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.
 제50조(보고) ① 은행지주회사는
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이
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감
 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②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, 12
 월말 기준으로 은행지주회사의
 금융채 발행실적 등을 금융위에
 보고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	
연 락 처	02-2100-2841